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KAU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9.12.27		16		
2	2024.11.4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에서 운영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는 학습과정(이하 “학점인정과정”이라 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개정 2019.12.27>

제2조 (지원자격) 학점인정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단, 대학(전문대학, 개방대학, 각종학교 포함)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제3조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관할 행정 부서에 신고된 교육원의 모집인원으로 한다.

제4조 (지원절차) 학점인정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자격 인정증명서)
3. 기타(전적대가 있는 학생은 관련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등)

제5조 (전형방법)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공별로 평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 학점인정과정에 합격한 자는 학습비를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 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으로 간주한다.

제6조의 2 (학습비 분할납부)

① 학점은행제과정 수강생은 학습과정 시작일 하루 전까지 학습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습비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분할납부는 별도의 분할납부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하여 수강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분할납부 기간에 전체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1/2의 학습비는 개강 후 5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 제1항에 따른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1. 마지막 학기 등록 대상자
2. 5과목 미만 수강신청자

<본조 신설 2024.11.4>

제7조 (수업) 학점인정과정의 등록생은 교육원에 개설된 학점인정과정에서 수업한다.

제8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정기휴업) 정기 휴업은 국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단, 휴업 일에 수업이 있을시 반드시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수업을 진행한다.

제10조 (장학금) ① 장학금은 총장 승인 후 지급한다.

- ②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③ 선발은 매 학기 5과목 이상 수강 신청하는 일반수강생에 한한다.
- ④ 장학금의 이종수혜는 원칙적으로 학습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단 성적 장

학금 및 국가유공자 장학금 제외한 장학에 대해서는 학습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본조 전문 개정 2024.11.4>

제11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른다.

제12조 (이수단위) 교과목 이수단위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2. 수업시간은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교과목 특성상 이를 달리 할 수도 있다.

제13조 (학점신청) 학점인정과정에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학점인정과정은 1학기 24학점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진행자는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진행자는 60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4조 (시험)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며, 과정에 따라 이론시험, 실기시험, 과제 평가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학업성적)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평소성적으로 종합 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단, 실형. 실습에 관한 과목은 평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6조 (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 평가방법은 따로 이를 정한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
A0	90~ 94	4.0
B+	85~ 89	3.5
B0	80~ 84	3.0
C+	75~ 79	2.5
C0	70~ 74	2.0
D+	65~ 69	1.5
D0	60~ 64	1.0
F	0~ 59	0

제16조의 2 (강의평가)

- ① 학습자의 강의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여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 ④ 강의평가 결과는 교·강사에게 통보, 강의 및 교육과정 개선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1.4>

제17조 (학점인정)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해당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할 것
2.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이 10분의 6 이상일 것

3.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 인정 절차에 따라 인정받을것

제18조 (학점취소) 인정된 학점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점인정 과정 이수 후 부적격자로 밝혀졌을 때
2. 시험에서의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제19조 (학사학위이수학점) 학위수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총 인정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것
2. 총 인정학점 중 교양과목의 학점이 30학점 이상일 것
3. 총 인정학점 중 전공과목의 학점이 60학점 이상일 것
4.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할 것

제20조 (전문학사학위이수학점) 학위수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총 인정학점이 80학점 이상일 것
2. 총 인정학점 중 교양과목의 학점이 15학점 이상일 것
3. 총 인정학점 중 전공과목의 학점이 45학점 이상일 것
4.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할 것

제21조(학위수여요건) 학칙 제28조에 의한 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수여를 신청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졸업사정을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자
2. 교육원에 등록(교육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포함)하여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자
3. 총 인정학점에서 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60학점, 교양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제21조의 2 (공결)

① 원장은 수강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지 서식 4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3. 본인의 결혼 및 질병 등의 입원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 출전
6. 그 밖에 원장이 결재하는 사항

②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공결 발생일 기준 일주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11.4>

제22조 (전문학사학위수여요건) 전문학사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수여를 신청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졸업사정을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
2. 교육원에 등록(교육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포함)하여 취득한 학점이

45학점 이상인자

3. 총 인정학점에서 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45학점, 교양과목 1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제23조 (학사 학위신청방법 및 절차) 학위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사학위 신청동의서(별지서식 2호)를 교육원에 제출한다.
2. 학위수여 요건 충족 및 학위수여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심의 후 승인한다.

제24조 (전문학사 학위신청방법 및 절차) 학위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전문학사학위 신청동의서(별지서식 2호)를 교육원에 제출한다.
2. 학위수여 요건 충족 및 학위수여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심의 후 승인한다.

제26조 (학위종별) 학위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의 표준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학위증 및 증명서 발급) 학사학위 수여자에 대한 학위증 및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학위증(별지서식 1호), 학위증명서는 교육원에서 발급한다.
2. 학위번호는 학부생과 별도 관리한다.
3. 학위증 및 각 증명서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28조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한다.

제28조 (학위증 및 증명서 발급) 전문학사학위 수여자에 대한 학위증 및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학위증(별지서식 3호), 학위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로 발급한다.
2. 학위번호는 학부생과 별도 관리한다.
3. 학위증 및 각 증명서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한다.

제28조의 2 (상담창구) ①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상담은 상담실, 지도교수 연구실, 강의실 등에서 진행한다.<본조 신설 2024.11.4>

제29조 (보칙)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사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6월15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이전에 해당자가 있으면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9년12월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10월 22일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1호[학사학위증]

제 2XXXXXX호

학 위 증

성 명 : 0 0 0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와 같이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전공 : 전공(사)

2000년 00월 00일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00박사 0 0 0

학위등록번호 : 항공대-학점-20XX-XXX

별지 서식 2호[학위신청동의서]

제 2XXXXXX 호

학 위 증

성 명:

생년월일:

전 공: ()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교육부장관 (직 인)

학위등록번호 :

별지 서식 4호[공결승인신청서]<신설 2024.11.4>

공 결 승 인 신 청 서

학습과정 (과목)명		담당 교· 강사	
성 명		연락처	
<p>○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p> <p>○ 신청사유 :</p>			

붙임 : 공결사유 증빙서류 1부.

위와 같이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항공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별지 서식 5호[수강료 분할 납부신청서]<신설 2024.11.4>

수강료 분할 납부 신청서

인적사항	전 공 명		
	주 민 번 호	-	
	성 명 / 연 락 처	/	
	주 소		
	보 호 자	성 명	
		연 락 처	
분납내역	해 당 과 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 크)	<input type="checkbox"/> 국토교통부 지정 과정 <input type="checkbox"/> 학점은행제 과정 <input type="checkbox"/> 모두 해당	
	해 당 학 기	년도	학기
	총 액	금	원
분납사유			
분납기간 설정	분납 횟수	납부일	금액
	1차		
	2차		
	3차		
위와 같이 수강료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한 내용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 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005-601-632732 / 예금주: 한국항공대학교 ※ 입금시에는 반드시 학생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	(인)		
담당자	확인자	한국항공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별표1.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신설 2024.11.4>

장학명	지급내용 및 기준	지급액
성적장학금 (전체수석, 차석, 분반결 성적우수, 분반별 성적장려)	○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직전학기 및 금번학기 기준이수학점 이수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 재학생 수가 40명 미만일 경우, 분반별 장학금은 미지급	- 전체수석 : 학습비의 100% - 전체차석 : 학습비의 50% - 분반별 성적우수 : 80만원 - 분반별 성적장려 : 40만원
반대표 장학금	○ 매 학기 한 학급을 기준으로 반 대표에 해당하는 자에 지급하는 정액 장학금 (학습비 초과지급 가능)	- 정액 : 40만원
학생지원 장학금	○ 본원의 일반수강생으로서 학습과정 전 과정을 이수하며 실험·실습과목을 수강하거나, 특강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학습비 초과지급 가능)	- 학습비의 20% 이내로 지급
국가유공자 장학금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국가유공자(본인 및 자녀) 및독립유공자((손)자녀) 학위수여 시까지 지급하는 장학금 단, 직전학기 성적70/100 이상,이수학점 제외	- (손)자녀 : 50% - 본인 : 학습비전액
가족장학금	○ 가족장학금의 지급기준은 형제자매가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1명에게 학위수여식 까지 지급 지급하는 장학 (학습비 초과지급 가능)	- 학습비의 20% 이내로 지급
특별장학금	○ 기타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학습비 초과지급 가능)	- 학습비의 20% 이내로 지급